

3. 대학원 학사시행세칙(2022.6.21. 명칭변경)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하여 일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1. 자구수정)

제2조(전공 설치 및 정원조정) 전공 설치 및 입학정원 조정은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과 총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① 본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2. 학·석사연계과정

② 학·석사연계과정의 정원, 지원자격, 전형방법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석사연계과정 운영 내규」으로 따로 정한다.

제 2 장 입 학

제4조(입학) ① 입학은 학칙 제5조 내지 제12조에 의하되, 입학지원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②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라도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5조(입학지원서류)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교)전 학년 성적증명서
4. 수학계획서(소정양식)
5. 재직증명서(재직자에 한함)
6. 경력증명서(재직자에 한함)
7. 기타 필요한 서류

제6조(입학전형)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전형은 시험이나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대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형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학절차)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서류 제출
2. 시험 또는 서류심사
3. 면접고사(단 학·석사 연계과정 입학생은 면제함)
4. 합격자 발표
5. 입학등록

제8조(입학사정) 대학원장은 시험이나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입학사정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총장이 허가한다.

제9조(합격자 발표) 입학사정 후 합격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입학허가통지서를 발부한다.

제 3 장 등 록

- 제10조(등록)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입학허가통지서를 발부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입학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초 수업 개시 전 학교에서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당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학생의 초과수업료는 수강변경기간 이후 별도로 정한 기간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수업료는 (초과 수강신청 학점/해당학기 최대 이수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 총액으로 한다.
- ③ 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

제 4 장 수강신청

- 제11조(수강신청 및 변경) ① 학생은 제22조의 대학원 교과과정표에 정해진 과목에 대해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학기당 이수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 ③ 수강신청은 반드시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사 전산망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 ④ 수강신청의 변경은 수업개시 후 1주가 경과하기 전에 지정된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
- ⑤ 전공주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 및 변경을 지도할 수 있다.
- ⑥ 수강신청 5명 미만의 교과목은 수강변경 기간 전 폐강 조치한다.

제 5 장 연구과정

- 제12조(연구생) 대학원에는 연구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
- 제13조(연구과정) 대학원장은 학칙 제3조와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실무와 더불어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 연구과정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4조(입학전형) 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 제15조(입학지원서류) 연구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정 입학지원서(소정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교)전 학년 성적증명서
 4. 수학계획서
 5. 재직증명서(재직자에 한함)
 6.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7. 기타 필요한 서류
- 제16조(입학사정) 대학원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입학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17조(입학정원) 연구과정의 입학정원은 석사학위과정의 정원 내로 한다.
- 제18조(등록) 연구과정에 입학한 자의 등록 절차 및 등록금은 석사학위 과정에 준한다.
- 제19조(연구기간) 연구과정에 입학한 자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20조(재학연한) 연구과정의 재학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1조(청강자격) 연구생은 매학기 6학점 이내의 과목을 청강할 수 있다.

제22조(연구과정이수증명서 발급) 대학원장은 연구생으로서 재학 중 2차 학기 이상 등록하고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과정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다.

제 6 장 교과과정 및 학점

제23조(교과과정) 교과과정은 전공별로 편성하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24조(이수구분 및 학점)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전공에서 인정하는 과목 총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2022.12.6. 자구수정)

②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③ 학칙 제14조에 의해 규정된 수업연한 내에 학칙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4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④ 전공별로 책정된 전공과목 또는 보충과목의 수강결과 학칙 제28조에 규정된 유효성적을 받지 못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 이미 취득한 총학점이 학칙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이수학점에 달하여도 석사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5조(동일과목 학점 이중취득) 동일한 교과목에 대하여 이중 취득한 학점은 보다 상위의 점수를 받은 학점을 인정한다.

제26조(학점의 인정) ① 국내·외 다른 대학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공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에 한하여 12학점 이내에서 취득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은 입학한 학기 초 14일 이내 학점인정신청서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

제27조(보충과목의 수강) ① 대학원장은 출신대학의 전공분야가 본 대학원의 설치전공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충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② 전공 주임교수는 보충과목을 이수할 학생에게 해당과목을 지정하여 수강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보충과목 이수학점은 학칙 제23조에 규정된 이수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실습은 16학점 이상 취득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재수강) 학생은 이수교과목 중 학칙 제28조에 규정된 유효성적을 받지 못한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통해 유효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7 장 성적평가 및 처리

제29조(성적평가) ① 매 학기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 또는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학업성적을 평가한다.

② 정기시험을 치를 경우 대학원장은 시험개시 2주 전에 시험시간표를 공고한다.

③ 학점의 인정은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2.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하여 그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나 석사학위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전 이수과목의 성적 평균이 3.0 이상이어야한다.

④ 정기시험에 부득이 응시하지 못할 시에는 시험기일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시험불응신고서를 제출하여 전공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 8 장 휴학 및 복학

제30조(휴학) ① 학칙 제17조에 의하여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학 중 군에 입대하게 되는 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함으로써, 그리고 임신·출산·육아 중인 학생은 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함으로써 휴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휴학을 할 수 있다.

④ 제4항의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복학) 학칙 제18조에 의하여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기간 중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제 9 장 제적, 자원퇴학 및 재입학

제32조(제적) 학칙 제19조에 의거 재학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2. 학칙 제15조에 규정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를 하지 못한 자
3. 수업료나 등록금 등 납부금을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4. 기타 대학원생으로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33조(자원퇴학) 자원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와 상담을 거쳐 자원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4조(재입학) 재입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학칙 제19조 내지 제20조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대학원장은 재입학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한 과정의 동일전공에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학칙 제19조 제3호에 의하거나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재입학시 입학시험은 면제되나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기 취득한 학점은 인정한다.

제 10 장 공개강좌

제35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장소, 수강인원,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③ 수강자격은 대학원장이 인품이나 사회적 경력으로 보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④ 타 대학(기관)과 공동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때에는 이에 따른 운영상의 제반 내용은 양 대학(기관)간 협정된 내용에 따른다.

제 11 장 제증명

제36조(제증명) ① 학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증명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각종 증명서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는 학부에 준한다.

제 12 장 어학시험 및 종합시험

제36조(시험) 석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자는 어학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과목) 석사학위과정의 어학시험과 종합시험에 과목은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38조(응시자격) 석사학위과정의 어학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학시험 : 석사학위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

2. 종합시험 : 석사학위과정에서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제39조(시험시기) 매년 4월과 10월 중에 실시한다.

제40조(시험의 수준 및 시간) ① 어학시험은 전공영역의 외국어문헌 이해력을 평가한다.

② 종합시험은 학생이 석사학위청구논문 작성하는데 필요한 전공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한다.

③ 어학시험 및 종합시험의 시험시간은 각 교과목당 60분 이상으로 한다.

제41조(응시신청) 석사학위과정의 어학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을 위한 “응시신청서” 를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출제외피) 대학원장은 어학시험 및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을 위촉 또는 승인하여 출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3조(출제위원 수) 어학시험 및 종합시험을 위한 출제위원 수는 교과목마다 1인 이상으로 한다.

제44조(채점) 어학시험 및 종합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채점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채점을 의뢰할 수 있다.

제45조(합격기준) 종합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어학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은 각 과목 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③ 어학시험은 공인시험 점수(TOEIC 800점 이상, TOEFL 550점 이상)로 대체 할 수 있다.

제46조(재시험) ① 어학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재시험에 응시하는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재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장 학위논문

제 1 절 논문지도교수

제47조(논문연구계획서 제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2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논문지도교수위촉)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때 전공 주임교수가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49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위의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 제50조(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의 지정된 일자에 논문제목을 기재한 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논문지도는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한 학기부터 실시하며, 논문지도비는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한 학기부터 졸업때까지 매학기 납부하여야 한다.
- 제51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와 전공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 논문작성 및 제출

- 제52조(제출자격)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이어야 한다.
1. 학칙 제23조에 규정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학칙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해 규정된 유효성적을 받은 자
 2. 어학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제53조(논문 제출절차)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논문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대학원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 1부
 2. 논문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고 3부
 4. 대학졸업증명서 1부
 5. 소정의 논문 심사료
- 제54조(제출시기) 논문심사를 위한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고는 5월과 11월 중 정해진 기일 내에 대학원 교학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절 논문심사

- 제55조(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이 맡는다.
- 제56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 제57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논문내용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②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한다.
- 제58조(심사보고) ① 심사위원은 “심사결과표”에 심사결과를 기재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후에 심사위원의 “심사결과표”와 심사내용의 종합결과를 기재한 “석사학위 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 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에는 심사위원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제59조(논문 사정기준) ① 논문심사는 A, B, F등급으로 평가한다.
- ② F가 심사위원의 3분의 2를 넘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제60조(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 석사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4 장 졸업사정 및 학위수여

제61조(학위수여대상) 학칙 제34조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제62조(졸업사정절차) ① 대학원장은 졸업사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는다.

② 졸업사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전 학년 성적증명서
2. 어학시험 및 종합시험 결과서
3.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63조(학위의 수여) ① 제61조의 절차를 거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석사학위 수여는 학칙의 별지 “서식 1”에 의한 학위기로서 총장이 수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